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시자격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2007. 4. 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2012. 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관련) 「의료법」 부칙(2023. 5. 19.)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조산사	• 「의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관련) 「의료법」 부칙(2023. 5. 19.)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약사	• 「약사법」 제3조, 동법 부칙(2007. 4. 11.) 제15조, 동법 부칙(2019. 1. 15.) 제2조, 동법 부칙(2020. 4. 7.)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한약사	• 「약사법」 제4조 또는 동법 부칙(2007. 4. 11.)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안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률 부칙(1995. 1. 5.) 제4조, 동법률 부칙(2023. 10. 3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시험직종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2·3급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1·2급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및 동법 부칙(법률 제11010호, 2011. 8.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다만, 2급 언어재활사의 경우 2026년 2월 28일 이전 원격대학 졸업생은 나.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확인 필요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또는 동법 부칙(2019. 12.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조공학사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가. <응시자격 관련 전직종 공통 안내사항>

-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 등록을 완료한 자(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 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응시제한 및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 응시제한 결격사유의 경우 시험시행일로 하고, 면허(자격) 결격사유의 경우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합니다. 단, 법령 상 결격사유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법에 따릅니다.

나.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 <의사 및 치과의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3]의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 면제조항 관련,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조산사>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의료법」 제6조제1호에 의한 조산 수습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7년 2월말 이전에 수습을 마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안경사> 1995년 10월 6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27년 4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7년 4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대한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34호, 2017. 11. 23.> 제2조)에 따라 2017년 12월 30일 당시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7년 12월 30일 당시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졸업 후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대한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00호, 2021. 6. 4.> 제4조)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당시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1년 12월 4일 당시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졸업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1급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20927호, 2025. 4. 22.>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원격대학에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 <2급 언어재활사> (교과목 이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에 대한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40호, 2012. 7. 27.> 제2조)에 따라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졸업 후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원격대학 관련)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20927호, 2025. 4. 22.>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원격대학에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2024년 10월 31일 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2026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7년 2월말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현장실습과목 이수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2. 시험일정

시험직종(횟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장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	필기시험(컴퓨터시험(CBT)) 지역
1급 응급구조사(제32회)	2026. 8. 25.(화) ~ 9. 1.(화)	140,000원	실기: 2026. 9. 3.(목) 필기: 2026. 10. 21.(수)	실기: 2026. 10. 12.(월) ~ 16.(금) 필기: 2026. 11. 28.(토)	실기: 2026. 11. 13.(금) 필기: 2026. 12. 9.(수)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1·2급 언어재활사(제15회)	2026. 9. 2.(수) ~ 9. 9.(수)	140,000원	2026. 11. 4.(수)	2026. 12. 5.(토)	2026. 12. 23.(수)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안경사(제39회)	2026. 9. 2.(수) ~ 9. 9.(수)	110,000원	2026. 11. 4.(수)	2026. 12. 19.(토)	2027. 1. 8.(금)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한약사(제28회)	2026. 9. 15.(화) ~ 9. 22.(화)	추후 공지	2026. 12. 3.(목)	2027. 1. 6.(수)	2027. 1. 20.(수)	서울(경기포함)·전북
의사(제92회)	2026. 9. 15.(화) ~ 9. 22.(화)	추후 공지	2026. 12. 3.(목)	2027. 1. 7.(목) ~ 8.(금)	2027. 1. 20.(수)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제주
치과의사(제79회)	2026. 9. 15.(화) ~ 9. 22.(화)	추후 공지	2026. 12. 3.(목)	2027. 1. 14.(목)	2027. 2. 2.(화)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전북·강원
한의사(제82회)	2026. 9. 15.(화) ~ 9. 22.(화)	추후 공지	2026. 12. 3.(목)	2027. 1. 15.(금)	2027. 2. 2.(화)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
조산사(제38회)	2026. 9. 15.(화) ~ 9. 22.(화)	추후 공지	2026. 12. 3.(목)	2027. 1. 15.(금)	2027. 2. 2.(화)	서울(경기포함)
약사(제78회)	2026. 9. 15.(화) ~ 9. 22.(화)	추후 공지	2026. 12. 3.(목)	2027. 1. 21.(목)	2027. 2. 11.(목)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제주
보건교육사 1·2급(제18회)	2026. 9. 15.(화) ~ 9. 22.(화)	추후 공지	2026. 12. 3.(목)	2027. 1. 29.(금)	2027. 2. 15.(월)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
보건교육사 3급(제18회)	2026. 9. 15.(화) ~ 9. 22.(화)	추후 공지	2026. 12. 3.(목)	2027. 1. 29.(금)	2027. 2. 15.(월)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
보조공학사(제9회)	2026. 9. 15.(화) ~ 9. 22.(화)	추후 공지	2026. 12. 3.(목)	2027. 1. 30.(토)	2027. 2. 15.(월)	서울(경기포함)·부산·대전·전북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제11회)	2026. 9. 15.(화) ~ 9. 22.(화)	추후 공지	2026. 12. 3.(목)	2027. 1. 30.(토)	2027. 2. 15.(월)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대전·전북

3. 접수방법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대상	• (2027년도 2월 졸업예정자)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 접수 가능 • (기졸업자)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별도 명단 등록 없이 인터넷 접수 가능	• (외국대학 졸업자) ※ 단, 의사·치과의사·약사 예비시험 최종 합격자는 인터넷 접수 가능
접수처	• https://www.kuksiwon.or.kr	•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결제방법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함.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임.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로 계좌 및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기타준비물	• 사진파일: 276×354 픽셀 이상 크기 * 3.5 cm×4.5 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사진 1매(3.5 cm×4.5 cm)

※ 단, <외국학교 등 졸업자>의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주의사항
1. 면허(자격)증 사본 1매 2. 졸업증명서 1매 3. 성적증명서 1매	• 외국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전자 아포스티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 한하여 해당국가의 한국 주재공관에서 영사 확인 - 단,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졸업학교 등의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학기간 중 원격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YYYY.MM.DD ~ YYYY.MM.DD. 기간 중 해당 수업을 원격으로 수강하였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학교 담당자 서명 포함) 원본 또는 Official Letter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첨부서류	주의사항
5. 사진 2매	• 여권용 크기(3.5×4.5 cm)의 동일한 사진 2매 • 인화지로 출력한 원본만 가능(스캔 후 일반종이 출력물은 불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7. 면허효력관련 확인서	

- 「의료법」 부칙(2007. 4. 11.) 제9조, 「약사법」 부칙(2007. 4. 11.) 제1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95. 1. 5.)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인정(확인)된 자 및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접수(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과거 시험 정보찾기 - 실명인증 - 로그인)가 가능합니다.
- 제출했던 서류는 5년(서류보존 기간)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학교 등 졸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시원을 방문하여 필수서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하며,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응시원서 제출이 불가하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 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마. 필기시험(컴퓨터시험(CBT))은 시험장 선택제를 운영하며(1급 응급구조사 제외), 자세한 사항은 <별첨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험장 선택제 운영 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원서접수 기간에 방문하여 응시원서 및 ‘면제 시험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역의 시험장으로 배정됩니다.

바. 시험장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방법(인터넷)
○ 응시지역 변경	• (신청기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장소 공고 7일 전까지 • (신청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 시험장 선택 및 변경 (동일지역 내에서만 가능)	• (신청기한) 응시표 출력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방법)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응시지역 내에 시험장이 1개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장으로 자동 배정됨.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은 동일지역 내 시험장이 2개 이상인 지역만 해당하며, 시험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시험장 잔여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

○ 1급 응급구조사 실기시험의 응시지역 변경은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개인별 시험장소 및 입실시간 공지 이후 2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지역 내 시험장 변경과 입실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1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수기형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20일 전까지,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 필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한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구분	감면신청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지 못한 경우	• 별도 신청기간 내 개별 신청을 통해 응시수수료 감면 -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세부 감면 절차는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5. 필기시험(컴퓨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험직종 (총점)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의사 (320점)	제1일	1	1. 보건의약관계법규(20) 2. 의학총론(60)	08:30	09:00~10:45 (105분)	1점	
		2	1. 의학각론1(80)	11:10	11:20~13:05 (105분)		
	제2일	3	1. 의학각론2(80)	08:30	09:00~10:45 (105분)	1점	
		4	1. 의학각론3(80)	11:10	11:20~13:05 (105분)		
치과의사 (300점)		1	1. 구강내과학(13) 2. 치과보철학(35) 3. 소아치과학(23)	08:30	09:00~10:10 (70분)	1점	
		2	1. 치과교정학(29) 2. 구강병리학(13) 3. 구강생물학(42)	10:35	10:45~12:05 (80분)	1점 (단, 구강 생물학은 0.5점)	
		점심시간			12:05 ~ 13:05 (60분)		
		3	1. 영상치의학(23) 2. 치주과학(23) 3. 구강악안면외과학(35)	13:05	13:15~14:30 (75분)	1점	
		4	1. 치과보존학(35) 2. 구강보건학(17) 3. 치과재료학(13) 4. 보건의약관계법규(20)	14:55	15:05~16:25 (80분)		
한의사 (340점)		1	1. 내과학1(80)	08:30	09:00~10:15 (75분)	1점	
		2	1. 내과학2(32) 2. 침구학(48) 3. 보건의약관계법규(20)	10:40	10:50~12:25 (95분)		
		점심시간			12:25 ~ 13:25 (60분)		
		3	1. 외과학(16) 2. 신경정신과학(16) 3. 안이비인후과학(16) 4. 부인과학(32)	13:25	13:35~14:50 (75분)	1점	
		4	1. 소아과학(24) 2. 예방의학(24) 3. 한방생리학(16) 4. 본초학(16)	15:15	15:25~16:40 (75분)		
조산사 (165점)		1	1. 조산학(마취학 포함 110)	08:30	09:00~10:35 (95분)	1점	
		2	1. 신생아간호학(30) 2. 모자보건학(가족계획 포함 15) 3. 모자보건법(10)	11:00	11:10~11:55 (45분)		

시험직종 (총점)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약사 (350점)	1	1. 생명약학(100)	08:30	09:00~10:30 (90분)	1점
	2	1. 산업약학(90)	10:55	11:05~12:30 (85분)	
	점심시간		12:30 ~ 13:30 (60분)		
	3	1. 임상·실무약학1(77)	13:30	13:40~14:55 (75분)	1점
	4	1. 임상·실무약학2(63) 2. 보건·의약 관계 법규(20)	15:20	15:30~16:45 (75분)	
한약사 (250점)	1	1. 한약학 기초(110) 2. 보건·의약 관계 법규(30)	08:30	09:00~10:50 (110분)	1점
	2	1. 한약학 응용(110)	11:15	11:25~12:55 (90분)	
안경사 (250점)	1	1. 시광학이론(85)	08:30	09:00~10:15 (75분)	1점
	2	1. 의료관계법규(20) 2. 시광학응용(85)	10:40	10:50~12:20 (90분)	
	3	1. 실기시험(60)	12:45	12:55~13:55 (60분)	
1급 응급구조사 (230점)	1	1. 기초의학(30) 2. 응급환자관리(40) 3. 전문응급처치학총론(30) 4. 응급의료관련법령(20)	08:30	09:00~10:45 (105분)	1점
	2	1. 전문응급처치학각론(110)	11:10	11:20~12:55 (95분)	
보건교육사 1급 (60점)	1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20) 2. 보건교육방법론(20) 3. 보건사업관리(20)	08:30	09:00~10:15 (75분)	1점
보건교육사 2급 (180점)	1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25) 2. 보건교육방법론(20) 3. 보건사업관리(20) 4. 보건의료법규(20)	08:30	09:00~10:20 (80분)	1점
	2	1. 조사방법론(25) 2. 보건의사소통(25) 3. 보건학(20) 4. 보건교육학(25)	10:45	10:55~12:25 (90분)	
보건교육사 3급 (110점)	1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2. 보건학(30) 3. 보건교육학(30) 4. 보건의료법규(20)	08:30	09:00~10:40 (100분)	1점

시험직종 (총점)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1급 언어재활사 (140점)	1	1. 신경언어장애(24) 2. 언어발달장애(24) 3. 유창성장애(24)	13:30	14:00~15:15 (75분)	1점
	2	1. 음성장애(24) 2. 조음음운장애(24) 3. 언어재활현장실무(20)	15:40	15:55~17:00 (70분)	
2급 언어재활사 (150점)	1	1. 신경언어장애(30) 2. 유창성장애(25) 3. 음성장애(25)	08:30	09:00~10:15 (75분)	1점
	2	1. 언어발달장애(35) 2. 조음음운장애(35)	10:40	10:50~11:55 (65분)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50점)	1	1. 직업재활개론(14) 2. 재활상담(15) 3. 재활사례관리(15) 4. 직업평가(22)	08:30	09:00~09:55 (55분)	1점
	2	1. 직무개발과 배치(30) 2. 재활행정(24) 3. 재활정책(30)	10:20	10:30~11:40 (70분)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20점)	1	1. 직업재활개론(29) 2. 재활상담(11) 3. 재활사례관리(11) 4. 직업평가(17)	08:30	09:00~10:00 (60분)	1점
	2	1. 직무개발과 배치(30) 2. 재활행정(12) 3. 재활정책(10)	10:25	10:35~11:20 (45분)	
보조공학사 (170점)	1	1. 보조공학사 기초(70)	08:30	09:00~10:00 (60분)	1점
	2	1. 보조공학사 응용·실기(100)	10:25	10:35~12:00 (85분)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6. 실기시험 범위 및 응시자 준비물

시험직종	실기시험 범위	응시자 준비물
1급 응급구조사	• 응급구조사 업무에 필요한 기능 및 배근력 측정	• 성인용 포켓마스크(pocket mask, 마우스팁 포함), 영아용 포켓마스크, 라텍스 장갑 ※ 단, 라텍스 알러지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 본인이 준비한 다른 소재의 장갑 착용 허용. 배근력 수행에 유리하도록 접지면이 부착된 특수장갑은 금지

시험직종	실기시험 범위	응시자 준비물
		※ 포켓마스크 미지참 시 인공호흡이 포함된 시험 항목에 응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참
안경사	• 객관식 5지 선다형	• 없음

7.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직종	합격자 결정방법
의사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치과의사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단,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 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구강내과학 및 구강 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 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함.
한의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단,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 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함.
조산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약사 한약사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안경사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1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보건교육사 1·2·3급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시험직종	합격자 결정방법
1·2급 언어재활사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보조공학사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으로 함.

8. 시험응시 관련 유의사항

가.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으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시험(CBT)은 PC를 통해 답안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합니다.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기기(PC)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방법 및 응시자 배부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직종	시험방법	응시자 배부물품
의사(필기)	•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 • 기존 종이시험의 문제유형 및 멀티미디어 문제* 유형 일부 포함 ※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매체를 멀티미디어 자료라 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로 표현하여 다양한 시험정보를 구성한 문제 ※ 멀티미디어 문제는 '9문제' 출제 예정	• 이어폰 (멀티미디어 문제풀이 시 사용)
한의사	•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 • 기존 종이시험의 문제유형 및 멀티미디어 문제* 유형 일부 포함 ※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매체를 멀티미디어 자료라 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로 표현하여 다양한 시험정보를 구성한 문제 ※ 멀티미디어 문제는 1교시 시험과목인 내과학에서 1문제, 2교시 시험과목 중 침구학에서 2문제 출제	• 이어폰 (멀티미디어 문제풀이 시 사용)

시험직종	시험방법	응시자 배부물품
1급 응급구조사(필기) ※ 2급 응급구조사(필기)는 기존대로 지필(종이)시험으로 시행	•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 • 기존 태블릿 기반 시험의 문제유형 및 멀티미디어 문제* 유형 일부 포함 ※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매체를 멀티미디어 자료라 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로 표현하여 다양한 시험정보를 구성한 문제 ※ 1교시 시험과목 중 응급환자관리 '1문제' 및 전문응급처치학총론 '1문제', 2교시 시험과목인 전문응급처치학각론에서 '3문제' 출제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멀티미디어 샘플 문제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의 '컴퓨터시험 안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이어폰 (멀티미디어 문제풀이 시 사용)
1급 언어재활사	•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 • 기존 종이시험의 문제유형 및 멀티미디어 문제* 유형 일부 포함 ※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매체를 멀티미디어 자료라 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로 표현하여 다양한 시험정보를 구성한 문제 ※ 멀티미디어 문제는 2교시 시험과목 중 언어재활현장실무에서 2문제 출제	• 이어폰 (멀티미디어 문제풀이 시 사용) • 메모용지(A4) 1매, 볼펜 (시험종료 후 회수)
약사, 한약사, 안경사 2급 언어재활사	•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 • 기존 종이시험의 문제유형	• 메모용지(A4) 1매, 볼펜 (시험종료 후 회수)
치과의사(필기), 조산사, 보건교육사 1·2·3급, 보조공학사, 1·2급 장애인재활 상담사	•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 • 기존 종이시험의 문제유형	-

나. 컴퓨터시험(CBT)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국시원 유튜브 (YouTube)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시험(CBT) 튜토리얼은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컴퓨터시험 - CBT - CBT 체험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ksiwon.or.kr/CBT/index.html>)

(단,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데스크톱 PC를 사용하는 실제 시험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동되지 않거나 화면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문제 및 정답의 직종별 공개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여부	시험직종
공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안경사, 1급 응급구조사, 보건교육사 1·2·3급, 1·2급 언어재활사,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 단, 의사, 치과의사, 안경사,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비공개 ※ 의사, 한의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문제 중 멀티미디어 문제는 비공개
비공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 필기시험 시험문제 및 정답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실 전면의 ‘시험문제 공개 및 합격자 발표 안내’ 부착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1급 응급구조사 실기시험 이의신청 일정 및 절차 등은 <별첨2> ‘1급 응급구조사 국가 시험 실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실기시험(1급 응급구조사) 채점(기준)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전체 교시 중 어느 하나의 교시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는 해당 교시 및 나머지 교시에도 응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시험장을 개방하지 않아 시험장 입장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운전면허증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 위의 신분증 중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 포함)도 인정
-

○ 응시표가 없는 경우,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 중에는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AI스마트안경,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휴대 및 사용이 불가하며, 만일 휴대 및 사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 혹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화장실 이용 후에는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차. 컴퓨터 화면에 시험시간 및 남은시간이 표시됩니다.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기능 포함)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합니다. 전자시계(스마트시계 등 포함)는 휴대가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 중 고의로 시험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 점심시간이 포함된 시험(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응시자는 밀폐가 가능한 도시락 및 뚜껑이 있는 음용수는 지참할 수 있으며, 식사 후 시험장내에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직접 회수하여 최종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실 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 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가. 부정행위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답안카드, 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 또는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CBT) 중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시험기기에 연결하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행위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 행위자 등 처리 지침」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

-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부정행위자의 기준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시험장에서 감독관 또는 다른 응시자 등 타인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주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10.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
-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통보 외 무단으로 휴대폰 문자(SMS) 등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나. 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자격)교부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조산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약사,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보건교육사 1·2·3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www.khepi.or.kr/khe>)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5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학교 등 졸업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교부신청서, 의사 진단서, 유효한 면허(자격)증 사본을 각 1매씩 제출해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면허(자격)의 유효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난 날부터 면허(자격)발급이 진행됩니다.

다.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라.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 후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응시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본인의 답안카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 면허·자격·증명서 - 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휴대폰 문자(SMS)를 통해 안내됩니다.

※ 답안카드 열람희망장소는 국가시험원 본원 및 시험센터 중 선택 가능

- 방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답안카드 열람희망 장소를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후 답안카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중에는 복사, 사진촬영, 메일 전송 등은 불가합니다.

<별첨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험장 선택제 운영방안 안내

<별첨2>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별첨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마침